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9
------	-----

2018. 12. 17.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10월 16일, 임만균 의원(찬성위원 19명)

나. 회부일자 : 2018년 10월 2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 제10차 기획경제위원회(2018.12.17)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임만균 의원)

1. 제안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보전의 대상을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명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의 제명 변경 사항을 서울특별시 조례에 일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종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제7조).
- 나. 종전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
- 다. 종전의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8조~제9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명과 조항, 용어 등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일괄 반영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자치법규 일괄개정 사항

- 지방자치의 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속화로 지방행정의 영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주민생활 속에서 자치법규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서울시는 현재 604건¹⁾의 다양한 조례를 제정·시행중에 있으나,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더라도 입법기술적으로 이를 적시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괄정비 형식으로 복수의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음.

1) 서울시 조례와 규칙 등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에 조례 604건, 규칙 224건, 훈령 29건, 예규 9건이 게재되어 있음(2018.12. 4. 기준).

- 2003년 이후 모두 16회에 걸쳐 자치법규와 각종 위원회를 일괄정비 형식으로 개정했고, 이 중 11건의 일괄정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

〈표 1〉 서울시 일괄조례 형식 조례 처리 현황

연 번	발의 일시	조 례 명	발의자	처리결과
1	2003. 2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시장	가결
2	2004. 1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시장	가결
3	2007. 1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가결
4	2008. 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가결
5	2008. 6	서울특별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정비 조례안	의원	폐기
6	2009. 1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가결
7	2009. 10	행정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가결
8	2010. 1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철회
9	2011. 6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철회
10	2014. 10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폐기
11	2015. 9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원	가결

12	2015. 1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 개정에 관한 조례안	시장	폐기
13	2015. 1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안	의원	가결
14	2016. 1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원	가결
15	2017. 10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원	가결
16	2018. 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시장	가결

- 일괄 정비 형식의 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시차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방식의 효율성과 편의성으로 신속하게 자치법규 정비를 가능케 하여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실질적 심사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취지가 동일하고 개별 상임위원회의 고유한 의안심사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비교적 사소한 법령 개정사항이나 통합되어 개정되어야 할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

-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명, 조문, 용어 등이 변경된 사항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를 포함한 8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정비하고 있음.

〈표 2〉 일괄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

개정사항		개정내용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변경(2017. 1. 17)	-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연환경보전조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 「도시계획 조례」 6건의 조례에 법령의 제명, 용어 등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제명 변경(2015. 6. 22)	- 「도시계획 조례」에서 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함
3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2016. 5. 29)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서 법령의 제명과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함

- 다만, 조례안에서 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와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표 3〉 도시계획 조례 수정의견(안 제2조)

원 안	수 정 의 견
<p>제38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 4. (생 략)</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p> <p>가. (생 략)</p> <p>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 사용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u>후계농어업경영인</u>,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u>전업농어업인</u> 또는 지방자</p>	<p>제38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p> <p>-----</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p> <p>-----</p> <p>-----</p> <p>-----</p> <p>-----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p> <p>----- <u>후계농업경영인</u>-----</p> <p>----- <u>전업농업인</u> 및 「수</p>

<p>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p> <p>다. (생략) 6. ~ 8. (생략)</p>	<p><u>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후계 수산업경영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p> <p>다. (현행과 같음) 6. ~ 8. (현행과 같음)</p>
---	--

<표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의견(안 제4조)

원안	수정의견
<p>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u>폐수종말처리시설</u>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p>	<p>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u>물환경보전법</u>」 제49조에 따른 <u>공공폐수처리시설</u>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 또한, 관계법령을 인용하고 있으나 조례안에 반영되지 못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인용조문 오류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수정이 요구됨.

〈표 5〉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협약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시장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p> <p>가. · 나. (생략)</p> <p>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p> <p>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 ----- ----- ----- -----.</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 기준</p> <p>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p>

<p style="text-align: center;"><u>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u></p> <p>마. ~ 사. (생략)</p> <p>4. (생략)</p> <p>제6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p> <p>① (생략)</p> <p>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u>대기환경보전법</u>」, 「<u>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u>」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p> <p>5.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에 따른 배출허용기준</u></p> <p>마. ~ 사.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제6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대기환경보전법</u>」, 「<u>물환경보전법</u>」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p> <p>5. (현행과 같음)</p>
---	---

〈표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수정의견(안 제9조)

원 안	수 정 의 건
<p>제11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u>자살예방센터</u>를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u>」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p>	<p>제11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자살예방센터</u>를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u>」 제15조에 따른 정신건</p>

건강복지센터--. ③·④ (생략)	강복지센터--. ③·④ (현행과 같음)
-----------------------	--------------------------

〈표 7〉 하수도 사용 조례안 개정문 수정의견

원안	수정의견
제7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 <u>하수도 사용 조례</u> ----- -----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 「없음」

가.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와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인용조문 오류 사항 등을 수정함.

나.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8조제5호나목에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
- 인용조문 오류를 수정함(안 제9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관계법령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10조 신설).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9
----------	-----------

발의년월일 : 2018년 12월 17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와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인용조문 오류 사항 등을 수정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8조제5호나목에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
- 나. 인용조문 오류를 수정함(안 제9조).
- 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관계법령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10조 신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
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2조 중 “제38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제3조제6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
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
법」 제2조제10호”로 한다.”를 “제38조제5호나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후계농어업경영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전업농어업”을 “전업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
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
분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를 “「농업·농
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로 한다.

안 제4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안 제7조 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수도 사용 조례”로 한다.

안 제9조 중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u>제38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u>를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u>”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u>「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u>”를 “<u>「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u>”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u>「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u>”를 “<u>「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u>”로 한다.</p>	<p>제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 ----- -.</p> <p><u>제38조제5호나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u>을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u>”으로, “<u>후계농어업경영인</u>”을 “<u>후계농업경영인</u>”으로, “<u>전업농어업</u>”을 “<u>전업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u>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u>”를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u>”로 하고, 같은 호</p>

제4조(「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

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

-----.

----- 공공폐수처리시설-----.

제7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 하수도 사용 조례 -----

--.

제9조(「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

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신 설>

례」의 개정) -----

-----.

-----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 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서울특별시 조례 관련 상위법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 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너목1) 및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9조제9호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37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38조제5호나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후계농어업경영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전업농어업”을 “전업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55조의2제3호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3조”로 한다.

제16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4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8조”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제23조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보건법」 제8조제1항”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
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